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 소유권의 상속이전 신청 안내 의무화 및 관련
조항의 상향 입법〉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87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제220288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 소유권의 상속이전 신청 안내 의무화 및 관련 조항의 상향 입법(안 제12조)	2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8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 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동차 소유권의 상속이전 신청 안내 의무화 및 관련 조항의 상향 입법 (안 제12조제7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에 관하여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속 이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전등록) ① ~ ⑥ (생략)	제12조(이전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⑦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u>
<u>⑦</u> (생략)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¹⁾는 자동차의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²⁾에서는 이전등록 유형별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³⁾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2)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고시(제2012-12호)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내규정과 관련하여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법 제80조, 제85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12조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지연기간 50일 이상인 경우)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상속이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며,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상향 입법에 따라 자동차 상속 이전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1호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 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관련 조항을 현행 자동차등록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 방법 및 절차 등은 모두 하위법령인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이에 상속이전 신청 안내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상속 이전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이해도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이전등록 신청 안내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관청 공무원이 상속인을 특정하여 안내해야 할 경우 상속대상자를 모두 파악해야하는 점, 공무원이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 (1~4순위) 내에서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행 「자동차등록령」과 같이 사망자의 주소지로 안내하는 등 적절한 안내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 안내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나,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 방법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불필요함.

향후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위법령에서 개정 반영을 검토하겠음.

문 의 처
02)6788-5582